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37
----------	-------

제안연월일 : 2023. 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735	김승원의원	2021. 4. 27.	2021. 6. 16.
	11562	오영환의원	2021. 7. 19.	2021. 11. 11.
	13111	김원이의원	2021. 11. 3.	2022. 4. 26.
	13471	최종윤의원	2021. 11. 22.	2022. 4. 26.
	14646	홍석준의원	2022. 2. 3.	2022. 4. 26.

나.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2022. 12. 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 12. 9.)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00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 12. 9.) 비용추
계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
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
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
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일정”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 중 “제12조제3항”을 각각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u>일정</u>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 ----- ----- <u>조례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u> <u>일정</u> ----- -----. ----- -----.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u>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u><신 설></u>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u>제12조제3항</u>을 준용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u>제12조제3항</u>을 준용한다.	항까지와 같음) <u>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제12조제4항</u>-----.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12조제4항</u>-----.
---	--